◉전주지청공고 제2026-70호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26년 05월 14일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

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

기업명 (인증번호)	대표자명	소재지	처분사유		처분일자
			근거규정	처분사유	
(유)가온에스이 (제2012-39호)	양○훈	전북 남원시 시청로 ○○-1	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	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 반납	2026. 5. 8.

2026. 5. 14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인